

지구국의 무선종사자의 자격·정원배치기준 (제117조제1항제2호 관련)

1. 해안지구국

전파전자통신기사 또는 무선설비기사	1명
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또는 무선설비산업기사	1명
전파전자통신기능사 또는 무선설비기능사	1명

2. 지구국[안테나의 지름이 3m 이상으로서 피더링크(Feeder Link)를 구성하는 것에 한정한다]

무선설비기사	1명
무선설비산업기사	1명
무선설비기능사	1명

3. 그 밖의 지구국(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소형지구국은 제외한다)

무선설비기능사	1명
---------	----